

교육부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교원 임용시험’이라 한다.)에서 시·도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원 부적격자 판정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제7조의2 개정)
 -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 6개월 전까지 공고(제9조 제3항 개정)
- 2) 외국어능력의 경우 공인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제7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 3) 제2차시험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불합격 처리 근거 마련(제7조 제7항, 제17조 제5항 신설)
- 4)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제17조 제3항, 제4항 개정)
- 5)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예고가 필요한 조항(제7조 제1항에서 제6항, 제7조의2, 제9조, 제17조 제3항, 제4항)의 경우에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부칙 제1조, 제2조 신설)

- 나. 시험감독관에 시험관리관도 명확히 포함 (제4조 제2항, 제22조 개정)
- 다. 시험의 방법에 대한 용어를 ‘기입형’에서 ‘단답형’으로 정비 (제7조 제1항 개정)
- 라. 예체능 등 교과외의 전문적 지도를 위해 실기 능력이 중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제1차 시험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정비 (제7조 제1항 단서 신설)
- 마. 응시자 제출서류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명시 및 제출서류 정비 (제10조 제2항 개정)
- 바. 합격증명서 관련 발급수수료 삭제 및 서식 추가 (제19조 개정)
- 사.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을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서 ‘접수 취소기간’으로 수정 (제21조 제2항 제3호 개정)
- 아.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제21조 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진행예정 ('20.5~6)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20.6)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독을”을 “감독 및 관리를”로, “시험감독관”을 “시험감독·관리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1차시험은 서답형(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등) 필기시험으로 한다. 필기시험은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을 제1차시험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⑥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⑦ 시험실시기관은 제2차시험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2차시험을 실시할 때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어의 회화 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영어 회화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해당 외국어의 공인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선발예정인원”을 “선발예정인원 및 제2차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3. 법 별표2 제1호 교원 경력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4. 법 별표2 제5호에 관한 서류
5.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7. 출신학교(교육대학 등만 해당한다)의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졸업 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성적의 합산비율, 동점자 처리 등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제2차시험에서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제19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별표1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를 “취소기간 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 중 “시험감독관”을 “시험감독·관리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2, 제9조, 제17조제3항, 제4항의 개정사항은 2022년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19조에 따른 합격증명서 서식

발급번호 제 호

20○○학년도 ○○○교육청
○○○○○○○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 격 증 명 서

응시과목 :

수험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이 사람은 20○○학년도 ○○ 교육청 ○○○○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	
확 인 자	
담 당 자	
연 락 처	

○ ○ ○ 교 육 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생략)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 시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위원 및 <u>시험감독관</u> 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감독 및 관리를</u> ----- ----- <u>시험감독·관리관</u>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험의 방법) ① 제1차시험은 <u>기입형·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다. 다만,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u> ② <u>필기시험은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u>	제7조(시험의 방법) ① 제1차시험은 <u>서답형(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등) 필기시험으로 한다. 필기시험은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능력을 평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을 제1차시험에서 실시할 수 있다.</u> ② <u>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u>

능력을 평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③ 실기·실험시험은 예·체능 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실험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실험 능력을 평가한다.

④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敎職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교직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⑤ 수업능력 평가는 모의 수업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신 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⑥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⑦ 시험실시기관은 제2차시험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중 전공에 대한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직적성심층면접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업능력평가를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평가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영어로 진행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① 제7조제1항-----

--.

② 시험실시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2차시험을 실시할 때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어의 회화 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영어 회화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해당 외국어의 공인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삭 제>

하는 수업능력을 포함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

② (생략)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
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
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
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
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0조(제출서류) ① (생략)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출신학교(교육대학 등만 해
당한다)의 전(全) 학년 성적증
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
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2.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
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선발예정인원 및 제2차시
험의 방법-----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
음)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에 응
시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생 략)

③ 최종 합격자는 제1차시험(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는 제외한다) 및 제2차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1. 제2차시험의 성적이 높은 사람
2.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신청할 때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현행과 같음)

③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성적의 합산비율, 동점자 처리 등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 실시기관이 정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제2차시험에서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
--- 때에는 별표1의 -----
---.

<삭 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험 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 통당 3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1조(응시수수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액을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신 설>

제2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제21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 취소기간 내-----

③ 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과 <u>시험감독관</u> 에 계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 <u>시험감독·관</u> <u>리관</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연 락 처	(044) 203 - 6481